

임원보수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기임원인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3 조 [보수의 종류]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 ② 제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일할계산]

- ①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 ②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6 조 [신규임원의 급여]

- ① 신규임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 ②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 임원의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7 조 [휴직자의 급여]

-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 ㉢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호를 준용한다.

제 8 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 ①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일할 계산한다.
- ② 임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 9 조 [기본급]

- ①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직 책	급 여
대표이사	연 500,000,000 이하
이사	연 500,000,000 이하
감사	연 500,000,000 이하

제 10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 등기임원에 한하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하여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 단, 회장 및 고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대우에 준한다.

제 3 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 ① 임기만료 퇴임
- ② 사임
- ③ 재임 중 사망
-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 4 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의 산정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근무기간별 퇴직금 계산식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근무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times 지급률

②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직급	근무기간별 지급률
대표이사/이사/감사	3배수

③ 회사는 자산사정등에 의해서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결의로 임원의 직급 별 한도내에서 퇴직금액을 조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재임연수의 계산]

-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임원의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 6 조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 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 ②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 ③ 재직 중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 당시 퇴직금의 100% 범위 이내

제 7 조 [퇴직금의 지급방법]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현금 외의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 8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임원)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정기상여금)

- ① 당사는 임원에게 직급에 따라 년 2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 시 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제 5 조 (성과상여금)

- ①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 대비 50% 초과 달성 시 초과 달성액의 10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 지급 시 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제 6 조 (상여금의 한도)

직전 회계연도의 연봉(연간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한도액내에서 결정한다.

구 분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지급율	300%	300%	300%

제 7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4조 제②항 및 제5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 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 8 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7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임원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제 1 조 [목적]

- ① 본 규정은 당사 임원으로서 회사에 헌신하여 공로가 다대한 임원의 유고시 유족들에게 임원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규정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③항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 3 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 ① 재직 중 순직
- ②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이사회결의에 따라 유족보상이 필요한 경우

제 4 조 [산정 및 지급]

- ① 임원의 유족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8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한다.
- ② 임원의 유족보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평균급여 * 1000 * 지급율

임원의 직급	지급율
대표이사/사내이사	3배수
감사	2배수

- ③ 임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정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때 민사배상판결금액 또는 합의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④ 유족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족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외의 회사의 자산(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기준액]

- 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③항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 3 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